

(국민의힘, 용산2)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행정자치위원회 최윤희 의원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용산2 선거구 행정자치위원회 최윤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단체 및 기업의 지정, 공유촉진위원회의 설치 등
다양한 정책적 근거를 제공하는 기존 조례의
운영 실태를 고려하여 보다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의 주요 이유는 현행 조례상 상설화된 공유촉진위원회의
운영이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이를 비상설 기구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안전이 발생할 때만 구성하고, 심의와 의결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해산되는 구조로 변경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본계획 수립을 5년 주기에서 필요 시 수립 가능하도록 조정하여 정책 추진의 유연성을 강화합니다.

둘째, 공유촉진위원회를 상설에서 비상설 체계로 전환하여 필요 시 구성 가능하도록 변경하고, 위원회 소집 근거를 “안전 발생 시 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촉진합니다.

셋째, 조례의 표현을 현행 법령과 일치하도록 정비하여 조례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높입니다.

이러한 개정을 통해 서울시는 행정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공유 촉진 정책이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